

예 산 총 칙

2012년도 추경 1회

제 1 조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

(단위:천원)

구 분	세입·세출예산총액	일시차입한도액
합 계	451,522,389	13,545,672
일반회계	322,539,000	9,676,170
특별회계	128,983,389	3,869,502
기타특별회계	128,983,389	3,869,502
의료급여기금운영특별회계	1,164,133	34,924
주차장특별회계	118,237	3,547
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	2,003,763	60,113
주택사업특별회계	94,951	2,849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105,975,977	3,179,279
농공지구조성사업특별회계	160,030	4,801
치수사업특별회계	1,258,447	37,753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임시특별회계	504,221	15,127
기반시설특별회계	86,180	2,585
원자력발전지역개발세특별회계	17,617,450	528,524

제 2 조 세입·세출 예산의 명세는 별첨 "세입·세출 예산"과 같다.

제 3 조 2012년도 명시이월사업은 별첨 "명시이월 사업조서"와 같다.

제 4 조 2012년도 사고이월사업은 별첨 "사고이월 사업조서"와 같다.

제 5 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2,987,821천원으로 한다.

제 6 조 지방재정법 제47조 제1항 단서규정에 의한 총액인건비에 포함된 경비 및 재무활동경비, 동일부서에서 동일부문에 있는 정책사업간 경비, 재해대책 및 복구경비 등은 상호 이용 할 수 있다.